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26
----------	-----

제출년월일 : 1998. . .
제출자 : 중구청장

1. 제안이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훈령 제27호('97.7.19)] 및 울산광역시 조례 준칙 [환미 67500-710('98.6.26)] 호에 의거 분리배출 방법, 공동보관 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 수수료 부과·징수등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므로써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푸르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지역, 배출방법, 배출요령을 정함(제4조, 제5조)
- 나.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제6조)
- 다. 음식물쓰레기 공동으로 수집·운반·처리 및 대행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여부등을 지도, 감독(제7조, 제9조)
- 라.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창구개설(제8조)
- 마.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제작에 관한사항
(제10조, 제11조)
- 바.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의 설치(12조)
- 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제13조)

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 운영(제15조)

자. 관련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등을 규칙으로 정할수 있도록 했음(제16조, 제17조)

3.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 울산광역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안)

4. 조례제정안 : 불임

5. 참고사항

-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20일간 일간(신문)지에 입법예고하고, 제정조례안의 전문을 구 환경미화과와 민원봉사실, 동사무소에 입법예고 기간동안 비치 공시하였으나 주민의 견 제시사항 없었음.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소멸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해당지역의 주민은 별표1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의 변경시에도 변

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감량 및 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의 공동처리 등) ① 2인 이상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자가 지역 또는 건물단위로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 "공동처리등"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감량기기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처리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 1인을 정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공동 처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검토후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단 별지 제2호서식은 감량의무사업자가 개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

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공동주택등 음식물쓰레기를 다량으로 공동처리등이 가능한 지역의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감량시설 또는 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협약을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 협약을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재활용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 ①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이하 "봉투"라 한다)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②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다른 쓰레기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노란색으로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③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봉투의 제작)

- ① 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 ② 구청장은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구 명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고 전면 또는 후면공간면을 이용하여 유료광고 문안을 표시 할 수 있다.
- ③ 봉투는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의 4종류로 한다.
- ④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2와 같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활용을 하기위한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

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자체 감량처리를 위한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감량 부산물도 최대한 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고 공동수집장소는 빗물·지표수등 물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악취·오수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한다.

- ② 봉투의 공급·판매가격은 별표3의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의 공급·판매가격에 의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4의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기준에 의하되 구청장이 결정·고시 한다.
- ③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당 월10리터기준량의 봉투대금을 지원하는등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력상실자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5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하며 민간기업과 공동 추진하거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갖춘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 레기 관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울산광 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공급·판매등에 관한 사항
2. 과태료의 부과 처분 및 징수등에 관한 사항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 칙

-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제1호에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는 제외한다.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하
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제4조 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찌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 병뚜껑, 패각류, 육류, 뼈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별표 2]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사양

(제11조 제4항 관련)

 봉투크기

(단위 : cm)

용량	내용물규격 (가로×세로)	묶는부분 (세로)
3ℓ	22×39.5	12(손잡이 있음)
5ℓ	26×46.5	13(손잡이 있음)
10ℓ	33×41.5	15(손잡이 있음)
20ℓ	42×50.5	19(손잡이 있음)

 문장(전면)

이 봉투를 묶기위한 부분입니다

문장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1)

- 일반용 -

1.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음식물쓰레기는 이 봉투에 담아 묶은후 배출하셔야 됩니다.
3. 이 봉투 이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 : 중구 환경미화과(☎ 290-0338) 및 동사무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별표 3]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공급·판매가격

(제13조 제2항 관련)

(단위:원)

용량(ℓ)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금액
3	56	4	60
5	94	6	100
10	189	11	200
20	378	22	400

(주)봉투공급액산출기초:판매액은 5원이상 절상, 5원미만은 절하

용량(ℓ)	수집운반비	상차비	처리비	봉투제작비
3	45	6	2	6
5	75	10	3	10
10	150	20	6	15
20	300	40	12	30

(주)봉투용량별 공급액 증감차액분은 봉투제작비에 수용 조정한다.

[별표4]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제13조 제2항 관련)

수집방법	구분		수수료 산출기준
전용봉투사용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사용제외지역)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판매가격
전용수거용기 사 용	공동주택	분양면적 31평초과	매월 : $A \times 5인 \times 30일 \times B \div 0.8Kg$
	주택	분양면적 31평이하	매월 : $A \times 4인 \times 30일 \times B \div 0.8Kg$
	의무사업장		매월: 1일 배출량 $\times 30일 \times C \div 0.8Kg$

- 【주】 1. A : 음식물쓰레기 울산평균1인1일 배출량
 B : 쓰레기종량제 봉투값 1ℓ 단가
 C : 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1ℓ 당 단가
2. 용량과 무게 환산율 : 1ℓ = 0.8Kg
3. 부과기준 : 1개월(30일기준)
4. 아파트 평형기준
- 가. 31평초과 하는 세대는 5인 기준
 나. 31평까지 해당하는 세대는 4인 기준
5. 전용수거용기 사용할 때 수수료 산출액의 100원미만은 절사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 쓰레기 배출		<input type="checkbox"/> 신고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사업장)		(전화:)				
사업장 규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실					
	⑦ 음식물쓰레기 배출예상량		Kg/월			
	⑧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량처리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일자	처리량	부산물발생량
	⑨ 자가재활 용계획	재활용량 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⑩ 위탁재활 용계획		위탁량	재활용방법	위탁업소명	업종	위탁업소주소·전화
	Kg/월					
⑪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 신고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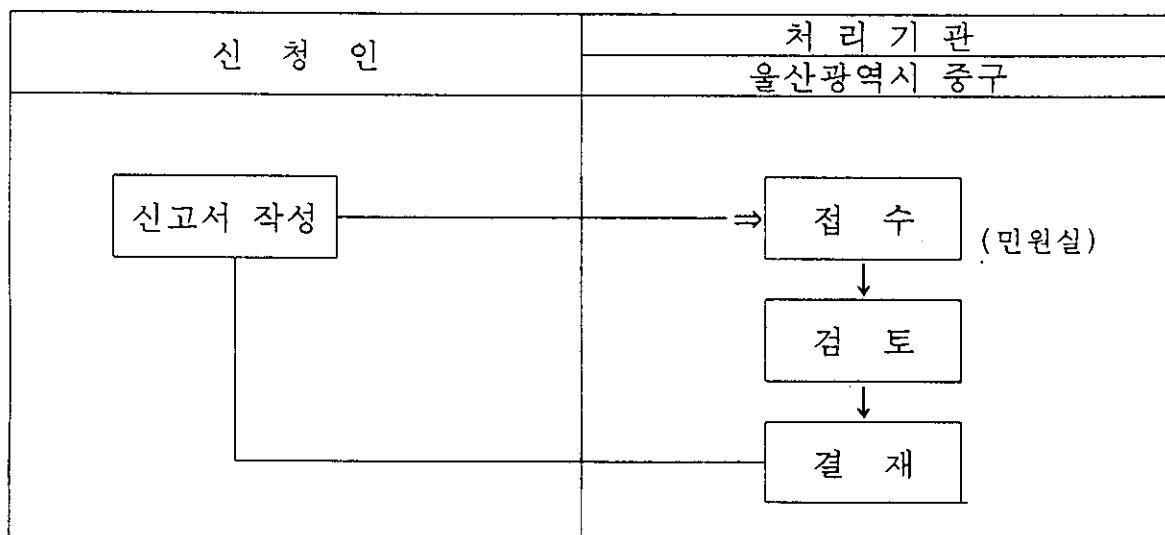
〈작성요령〉

1. ⑥란의 종류는 해당란 □에 V표를 하고 해당사항 기재
2. ⑦배출예상량 = ⑧처리량+⑨재활용량+⑩위탁량(물량은 1일평균 물량임)
3. ⑧자가감량처리계획은 감량기기를 설치하여 처리시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소각, 탈수, 건조, 발효, 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작성
4. ⑨자가재활용계획은 스스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퇴비등으로 이용시 작성하며 재활용방법은 사료, 퇴비등으로 기재
5. ⑩위탁재활용계획은 타인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업종은 농축산 가, 전문처리업소, 비료·사료생산업체, 공공시설 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방법은 사료, 퇴비등으로 기재
6. ⑪변경사항은 변경신고시 작성

〈구비서류〉

1. 위탁재활용자 및 위탁 수집, 운반자의 위탁처리 계약서 1부
단, 수탁처리자와 수집, 운반자가 동일하거나, 수탁처리자와 수집·운반자간의 계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의 입증서류 1부
2. 자가감량처리자중 건조시설 및 탈수시설 설치자가 부산물 합수율 75%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감량			자가(위탁) 재활용					보관량
		감량 방법	처리량	처리량 누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법	재활용자 운반자	재활용자 처리자	처리량 누계	

<작성요령>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 하여야 합니다.
- 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감량처리방법은 탈수·건조·발효·발효건조·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 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제출자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처리 실적							
자가처리	감량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력	연간 처리량	부산물처리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재활용	자가재활용의 경우		위탁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량	재활용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울산광역시 중구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계획서					처리기간 7일			
①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② 공동 수집 운반	수집운반량		자 가 수 집 운 반			위탁수집운반		
			소유자	차종	적재능력	업소명	대표자	
	Kg/월							
공동 보관	보관시설소재지		보 관 방 법		보관시설규모		보관후위탁업소명	
공동 처리	처리량 (발생 예상량)	감량처리				재 활용		
		시설 종류	소재지	시설 능력	처리 방법	위탁 업소명	대표자	주소(전화)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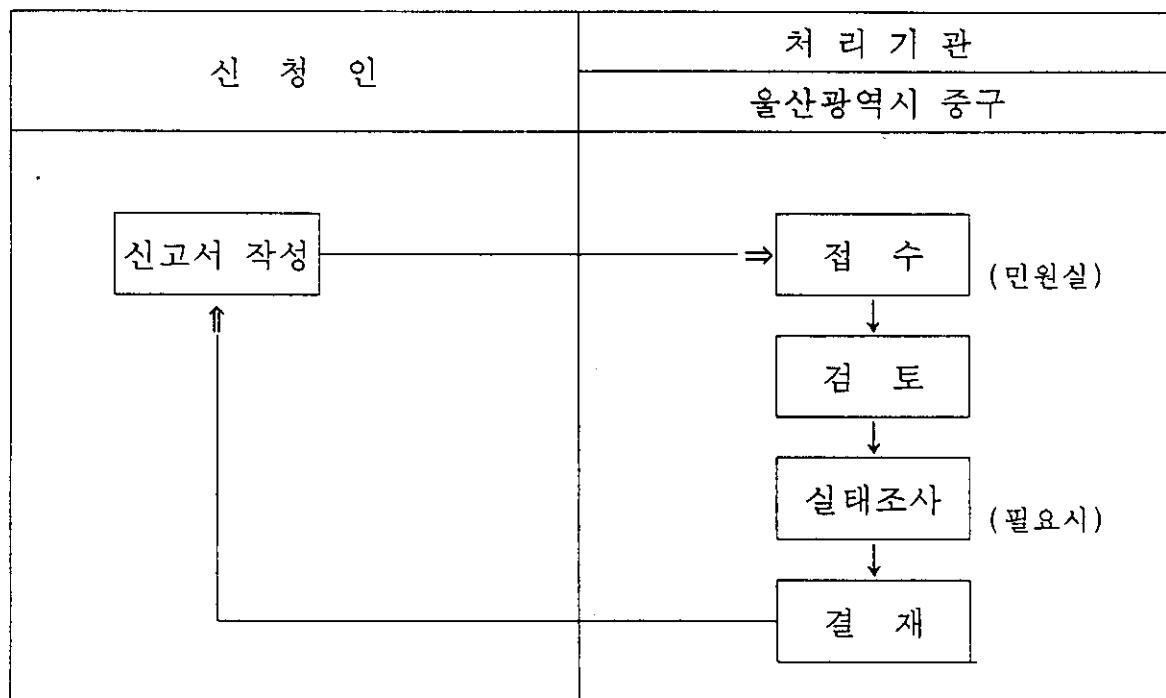
※ 구비서류

- 운영기구의 운영계획서(회원명단 및 시설장비구입 및 운영비용분담계획)
- 공동수집·운반, 보관 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내역
- 공동처리를 위한 시설·장비(차량포함)설치·운영계획서(자가처리시만 해당)
-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작성요령>

1. ①란의 신청인은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로 기재
2. ②란중 자가수집운반은 운영기구의 회원이 수집운반시에 기재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의 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6)

1. 의 안 명 :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관한조례(안)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98. 9. 4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 : '98. 9. 11
- 라. 위원회 심사 : '98. 9. 16

3.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가. 제안이유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 수수료 부과·징수등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푸르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지역, 배출방법과 요령, 음식물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 공동주택등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하는 방법 및 대행 처리업자와의 대행처리 방법과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퇴비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감량이행신고,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 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제13조, 동법시행령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제6조제1항
-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4. 검토보고요지

- 음식물쓰레기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주택 및 업소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에서 분리·수거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화등 재활용을 촉진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본조례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